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와 경제적 자립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 총론적으로

- 두분의 발제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옥님이 발제하신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는 여성장애인이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자립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 반가웠습니다.
- 여성장애인 정책은 여성정책과 장애인정책에 각각 통합적으로 결합해야 하고, 정부와 정당, NGO 등 모든 기구에서 지속적, 의도적으로 정책이 채택되고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된 만큼 정부와 의회에서 적극 수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고 복지부에 여성장애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보충의견

▶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대책에 관하여

-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시설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몇 군데에서 각 장애 유형에 따른 상담과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 배치를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상담원 훈련 및 상담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충된다면 각 지역의 여성장애인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기존 성폭력상담소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와 일반 성폭력상담소가 연계기능을 강화하면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피해자 위기개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

식을 높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을 발견할 경우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복지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성폭력 관련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및처벌에관한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연합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유지되고 있는 친고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성폭력 범죄라도 본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는 성폭력 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설에 있는 여성장애인 뿐 아니라 재가 여성장애인 등 모든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가족, 이웃 등에서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연합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친고죄 전면 폐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 여성장애인 경제적 자립지원방안에 대하여

- 여성장애인의 육아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도입,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할당 등 제시한 정책대안 중 당장 실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모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중 공공시설 내의 매점, 식당, 자동판매기 영업권을 편모 여성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모자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권은 대부분 남성장애인(지체장애 중심)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으로 편모 여성장애인에게 이들 영업권이 배정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사회기반이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행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자본의 세계화 이후 무한경쟁 속에서 여성,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형식적인 의무부양자가 있어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을 수급대상자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어떻게 할 것인가?

- 2001년 정부 예산에 여성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도록 정부, 의회에 여성운동과 장애인 운동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분야, 정치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위원회에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해야 한다.
- 여성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서 여성장애인 문제를 사회여론화해야 한다.
- 장애인정책, 여성정책 수립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통계,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